P - 36 - 2012

펄프·지류 제조업의 안전관리에 관한 기술지침

2012. 7.

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

안전보건기술지침의 개요

- O 작성자: 강 미진
- O 개정자 : 한 우 섭
- O 제·개정 경과
 - 2010년 08월 화학안전분야 제정위원회 심의(제정)
 - 2012년 7월 총괄 제정위원회 심의(개정, 법규개정조항 반영)
- O 관련 규격 및 자료
 - EPA, "The pulp and paper industry, the pulping process, and pollutant releases to the environment", 1997
 - Wendy L. coyle, "Process safety management and the pulp and paper industry", 1995
 - 영국 HSE 자료
 - 국내 펄프제지산업 기술자료 등
- O 기술지침의 적용 및 문의

이 기술지침에 대한 의견 또는 문의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홈 페이지 안전보건기술지침 소관 분야별 문의처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공표일자: 2012년 7월 18일

제 정 자: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

KOSHA GUIDE P - 36 - 2012

펄프·지류 제조업의 안전관리에 관한 기술지침

1. 목 적

이 지침은 소규모 사업장에서 펄프 및 지류를 제조함에 있어서의 위험요인과 안전 대책을 제시함으로써 위험물질로 인한 화재 등의 사고를 예방하는데 필요한 관리지침을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.

2. 적용범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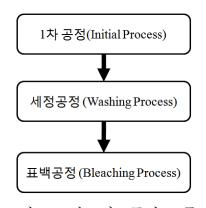
이 지침은 목재, 폐지 등을 이용하여 펄프 및 지류를 제조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하다.

3. 용어의 정의

- (1) 이 지침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 - (가) "펄프 (Pulp)"라 함은 목재나 그 밖의 섬유 식물에서 기계적·화학적 또는 그 중 간 방법에 의하여 얻는 셀룰로오스 섬유의 집합체를 말한다.
 - (나) "침지공정 (Digestion process)"이라 함은 화학적 방법에 의한 펄프제조 공정 중 목재에 포함된 리그닌을 적절한 용액으로 녹여내어 셀룰로오스로부터 분리 해내는 공정을 말한다.
 - (다) "리그린 (Lignin)"이라 함은 목재에 포함된 성분으로 셀룰로오스를 결합시키는 접착제 역할을 하는 열경화성 물질을 말한다.
 - (라) "셀룰로오스 (Cellulous)"라 함은 목재의 구성성분 중 하나로 통상 목재 중 40~ 50%를 차지하는 다당류를 말하며 섬유소라고도 한다.
 - (마) "표백"이라 함은 염소, 차아염소산염, 이산화염소 혹은 산소와 과산화물 등을 이용하여 펄프의 색깔을 하얗게 하는 것을 말한다.
- (2) 그 밖에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「산업안전보건법」, 같은 법 시행령, 같은 법 시행규칙 및 「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」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.

4. 펄프·지류 제조업의 위험요인

- 4.1 펄프·지류 제조공정의 일반사항
- 4.1.1 펄프 제조공정의 일반사항
 - (1) 펄프는 제조하는 공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된다.
 - (가) 화학펄프(Chemical pulp: CP): 아황산법, 소다법, 크라프트(Kraft, 황산염법)으로 만든 펄프 등이 있다.
 - (나) 기계펄프(Mechanical pulp: MP): 나무를 갈아서 만든 쇄목펄프 및 가압쇄목펄 프, 리파이너(Refiner)로 해섬하여 만든 리파이너기계펄프 등이 있다.
 - (다) 반화학펄프(Semi-chemical pulp): 산성아황산염, 중성아황산염 등으로 만든 화학펄프 등이 있다.
 - (라) 화학열기계펄프(Chemical thermo-mechanical pulp): 나무핍을 화햑약품으로 전처리한 후 고온의 기계로 만든 펄프 등이 있다.
 - (2) 펄프 제조공정은 크게 [그림 1]과 같이 분류된다.



<그림 1> 펄프제조공정 흐름도

- (3) 펄프를 표백한 후에는 펄프에 남아있는 수분을 제거하는 공정이 이어지는 것이 대부분이며, 주로 탈수와 건조공정으로 이루어진다.
- (4) 펄프 제조공정의 부대시설로는 사용한 화학약품의 처리 및 회수설비로 보일러, 증

P - 36 - 2012

발기(Evaporator), 농축기, 폐수설비 등이 있다.

4.1.2 지류 제조공정의 일반사항

- (1) 지류 제조공정은 크게 다음과 같이 분류된다.
 - (가) 조성공정: 지류를 제조하기 전 준비공정으로 종이의 원료인 펄프를 해리, 고해 및 충전제를 비롯한 각종 약품을 배합하는 과정을 거친다.
 - (나) 초지공정(Paper making): 종이의 원료를 탈수 및 건조하는 등의 공정을 말한다.
 - (다) 도공공정(Coating process): 인쇄적성 및 화상 재현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종이표면에 화학약품을 도포하고, 최종 건조하는 공정을 말한다.
 - (라) 완정공정(Finishing process): 제조된 종이를 수요자의 요구에 따라 절단하고 포장하여 창고에 이송하는 과정을 말한다.
- (2) 지류를 제조하기 위하여 필요한 부대설비 및 부대공정은 다음과 같다.
 - (가) 용수설비: 제조공정에 필요한 물을 공급하는 설비를 포함한다.
 - (나) 폐수설비: 제조공정 중 발생하는 각종 폐수를 처리하는 설비로 화학적 폐수처리 및 생물학적 폐수처리설비로 구분된다.
 - (다) 소각설비: 제조공정 중 발생하는 각종 슬러지(Sludge)나 폐기물을 소각하는 설비를 포함한다.

4.2 펄프·지류 제조공정의 위험요인

4.2.1 공정별 주요 위험요인

펄프·지류의 제조 시 각 공정에서 위험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요소는 다음과 같다.

- (1) 통나무 및 목재칩(Chip)의 취급: 복잡한 기계설비, 회전기기 및 운송기기
- (2) 연속식/회분식 침지(Digester): 고압·고온의 운전조건, 고농도의 산·알칼리
- (3) 기계펄프 제조: 복잡한 기계설비, 고온·고압의 운전조건
- (4) 석회가마(Lime kiln): 고온의 운전조건, 회전기기, 인화성 물질의 소각

P - 36 - 2012

- (5) 유압시스템(Hydraulic system): 고압의 운전조건, 회전기기, 기름(Oil)의 사용
- (6) 스팀 공급: 고온·고압의 운전조건, 2상 흐름(2-phase flow) 가능성
- (7) 회수 보일러(Recovery boilers): 고온·고압의 운전조건, 인화성 물질의 소각, 수증 기 폭발 가능성, 인화성 가스의 폭발
 - (가) 회수 보일러가 고온으로 운전되기 때문에 극소량의 수분이 존재하더라도 순간 적인 증발로 인한 물리적 폭발이 일어날 수 있다.
 - (나) 회수 보일러의 화염이 꺼졌다가 다시 가동될 때, 가동 전에 충분히 퍼지하지 않으면 폭발이 일어날 수 있다.
- (8) 초지기(Paper machines): 복잡한 기계설비, 회전기기, 건조공정의 고온·고압의 운 전조건
- (9) 창고: 복잡한 기계설비, 운송기기

4.2.2 펄프 제조공정별 위험요인

- (1) 화학적 및 반-화학적 펄프제조공법의 1차 공정은 침지공정으로 시작된다.
 - (가) 침지공정에 사용되는 화학물질은 주로 포름알데하이드(Formaldehyde), 메탄올 (Methanol), 아세트알데하이드(Acetaldehyde) 및 메틸에틸케톤(MEK: Methylethyl ketone) 등으로 <표 1>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각각의 물질은 대부분 독성 위험요인과 인화성 위험요인을 가지고 있다.
 - (나) 인화성 물질이 외부로 누출될 가능성이 있는 곳은 화재 및 폭발 위험이 존재한다.
 - (다) 독성 물질이 외부로 누출될 가능성이 있는 곳에서의 작업은 노출농도에 따라 근로자의 건강에 급성영향 혹은 만성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.
- (2) 세정공정은 용해된 리그닌과 침지공정 후 남아있는 화학물질을 세척하는 공정으로 <표 1>의 화학물질을 회수하는 공정이 포함될 수 있다.
- (3) 표백공정은 염소, 차아염소산염, 이산화염소, 산소 및 과산화물이 사용될 수 있는데, 공정에서 클로로포름(Chloroform), 메탄올, 포름알데하이드 및 MEK 등의 인화성 및 독성물질이 표백공정에서 생성될 수 있다.

<표 1> 표백공정에서 취급되는 주요 화학물질의 특성

물질명		포름알데하이드	메탄올	아세트알데하이드	메틸에틸케톤
CAS No.		50-00-0	67-56-1	75-07-0	78-93-3
NFPA Rating	Nh	3	1	3	1
	Nf	2	3	4	3
	Nr	2	0	2	0
녹는점 [℃]		-92	-98	-123.5	-86
끓는점 [℃]		-21	65	20.2	80
인화점 [℃]		_	12	-39	-9
가연범위 [%]		7 ~ 73	6 ~ 35.6	4 ~ 60	1.8 ~ 11.5
증기밀도			1.1	1.5	2.41
비중		_	0.79	0.788	0.8
자연발화온도 [℃]		430	385	185	505
TLV STEL [ppm]			250	150	300

4.2.3 지류 제조공정별 위험요인

- (1) 조성공정은 종이의 지합을 개선하고 강도를 향상시키는 외에 종이에 내수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사이즈제(Size agent) 등 화학약품을 사용하므로, 이들 화학약품의 취급 시 외부에 유출될 경우 미끄러짐을 유발하거나 건강 장해를 유발하는 등 안전·보건상 위험요인이 있다.
- (2) 초지공정은 압착과 같이 기계를 이용한 탈수 및 고온의 열풍 등을 통해 건조하는 공정이므로, 협착, 말림 및 화상 등의 위험요인이 있다.
- (3) 도공공정은 종이표면에 도료를 도피하고 건조하는 과정에서 열풍 및 고온에 의한 화상 위험요인이 있다. 또한 도피하는 화학약품이 인화성일 경우 건조공정 중 발 생한 화학약품의 증기로 인한 화재 위험요인이 있다.
- (4) 완정공정은 캘린더 성형, 압착, 제단 등의 기계적 작업으로 협착, 전단 등의 위험요인이 있다.

P - 36 - 2012

- (5) 지류제조공정은 발생하는 폐수를 미생물을 이용하여 생물학적으로 처리하는 경우 폐수의 저장탱크 내에서 박테리아의 활동으로 인화성 가스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.
- (6) 소각용 연료공급 배관에서 인화성 액체나 가스가 누출될 경우, 고온의 설비 및 화염과 접촉함으로써 화재의 위험이 있다.

4.3 기타 위험요인

- (1) 펄프 및 지류는 모두 인화성 물질이므로 화재 및 폭발 발생 시 화재의 확산을 초 대할 수 있다.
- (2) 펄프·지류 가공 시 발생하는 분진은 결막염 및 호흡기 질환을 유발하는 등 근로자 의 건강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.
- (3) 목재를 원료로 사용하는 경우, 나무, 분진, 껍질 및 수액 등의 접촉으로 팔, 손등, 얼굴 및 목 등에 염증이 발생할 수 있다.
- (4) 롤 형태의 완성품 적재 시 받침대 등으로 확실히 고정하지 않는 경우, 협착의 위험 이 있다.
- (5) 제품 및 원료의 적재 및 운반 시 무게중심을 고려하지 않을 경우, 중량물의 낙하로 인한 재해의 위험이 있다.
- (6) 제품 운반 시 중량물 취급에 따른 근골격계질환이 발생할 위험이 있다.

5. 안전대책

5.1 펄프 제조공정의 안전대책

- (1) 침지공정 및 표백공정은 인화성 물질을 취급하므로 이들 물질이 노출될 가능성이 있는 곳은 특히 다음과 같은 화재 및 폭발방지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.
 - (가) 인화성 물질이 외부로 누출될 가능성을 줄이기 위하여 관련 설비 및 부속설비 는 가능한 한 폐쇄계(Closed system)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.
 - (나) 인화성 물질의 저장, 취급 장소는 노출 가능성에 따라 폭발위험장소로 구분하여 방폭전기기가기구를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.

P - 36 - 2012

- (다) 인화성 물질이 누출될 가능성이 있는 곳은 가스감지기를 설치하여 폭발하한의 10% 이상의 가스농도가 감지되는 경우 경보발생 및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.
- (2) 펄프·지류 가공 시 분진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강제환기설비를 갖추거나 국소배기 장치를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. 다만, 이들 설비의 설치가 어려울 경우에는 호 흡기보호구를 착용하도록 하며, 작업장 주변에 분진이 쌓이지 않도록 한다.
- (3) 목재를 취급할 때에는 껍질 및 수액 등의 접촉으로 염증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소매가 긴 작업복을 입도록 하며, 얼굴, 목, 손 등이 가능한 한 접촉하지 않도록 개인 보호구를 착용하는 등 주의하여야 한다.

5.2 지류 제조공정의 안전대책

- (1) 지류 제조공정에서 사용되는 기기는 대부분 대형의 회전말림의 위험점을 가지므로, 이들 기계에 대한 방호장치를 법규 요구사항에 맞게 점검하고 검사하여야 한다.
- (2) 지류 제조공정에서 사용하는 화학약품은 대부분 건강상 악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피부나 눈에 들어가지 않도록 개인보호구를 착용하여야 한다.
- (3) 화학약품의 취급 시 바닥에 쏟는 경우 바닥이 미끄러워 넘어지는 사고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바닥에 액체가 고이지 않도록 경사를 두거나 즉시 닦아낼 수 있는 방재용품을 인근에 비치하여야 한다.
- (4) 건조공정에서 사용되는 열풍이나 고온의 기기 표면에 운전자가 접촉하지 않도록 개인보호구를 착용하거나 단열처리(Insulation)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.
- (5) 폐수처리설비 및 폐수 저장탱크에 인화성 가스의 발생우려가 있으므로 온도와 압력을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관련 설비를 개방하여야 하는 경우에는, 개방 전 인화성 가스의 농도를 측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.
- (6) 소각설비에 사용되는 연료가 주변으로 누출되지 않도록 연결부 등의 밀폐성능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검사하여야 한다. 또한 연료의 누출 가능성이 높은 곳에는 가스감지기를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.
- (7) 소각설비의 가동정지 후 재가동할 경우에는, 반드시 소각설비 내부를 불활성 분위 기로 퍼지한 후 내부에 인화성 가스가 없다는 것을 확인하여야 한다.

P - 36 - 2012

5.3 기타 안전대책

- (1) 펄프 및 지류는 인화성 물질이므로 주변에 고온설비, 화염, 정전기, 스파크 등의 점화원이 존재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.
- (2) 펄프·지류 가공 시 발생하는 분진은 8시간 노출 시 평균값으로 5 mg/m³ 이하의 양으로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.
- (3) 롤 형태의 제품은 경사가 없는 곳에 적재하고, 바닥에 받침대를 고정하여 예상치 못하게 굴러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.
- (4) 제품 및 원료는 적재된 물품의 상부에서부터 차례대로 운반하며, 중간이나 바닥에 있는 제품을 먼저 꺼내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.